

2006년 3.8 여성의 날

성폭력가해보구 형에 처하라



copied from (Fuckin' Politics) by Nara Yositoro



'성폭력 사건'은 매일 TV, 신문을 장식하는 단골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각계각층의 가해자와 각계각층의 피해자가 있고, 드러난 성폭력보다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이 수천 배 수만 배 많습니다.



'대학'이라는 공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수성폭력'은 교수가 가지는 권력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쉽게 은폐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학교'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교수 밑에서 일하는 연구생들의 경우, 성폭력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곧 일자리를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교수사회와 대학당국은 피해여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교수를 두둔하고, '학교의 명예'때문에 성폭력을 은폐하는데 더욱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대학의 교수성폭력을 예방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에서는
교수성폭력의 심각성과 우리의 요구안을
오늘, 3.8 여성의 날에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 성폭력 가해 교수 임용 반대

: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교수가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 혹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학교에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질적인 사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교수성폭력은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교수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로써 **〈성폭력 가해 교수를 임용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반성폭력 학칙 내 교수성폭력 특별조항 신설

: 현재 각 대학 내에 존재하는 반성폭력 학칙은 적용 대상 및 사건 규정의 모호함이나 대책 위원들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사건 해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욱이 교수성폭력의 경우, 사건 해결을 담당하는 대책위원의 다수가 교수들로 구성됨에 따라 교수 권력이 사건 해결에 미치는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수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성폭력 학칙 내 교수성폭력 특별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교수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실시

: 대학 내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의 대학에서 교수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다 해도 참가의 강제성이나 실질적인 교육내용 습득을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성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수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의 철저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연대